

의안번호	제 21 호
의결연월일	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연월일	2004. 6. 18.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4. 6. 18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하여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· 세부계획수립 및 표준화시책 시행근거 마련(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)
- 나.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(안 제8조 내지 안 제14조)
- 다. 지하시설물 구축·관리 및 활용규정(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)
- 라.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정(안 제19조 및 안제 20조)
- 마.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규정(안 제21조)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- 라. 기 타
 - 1)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 - 2) 입법예고(2004.5.25 ~ 6.14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 - 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리정보”라 함은 지형·지물·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2. “지리정보체계”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조작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
3. “총괄부서”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관리부서”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·관리·활용하는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·면·동을 말한다.
5. “도로기반시설물”이라 함은 도로, 상수도, 하수도, 가스, 통신, 전기, 송유관,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지리정보의 생산·관리·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

제4조(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 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한다.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
1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
2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
3.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
4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
5.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
6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7. 기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수립 등)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한다.

제6조(조직 및 인력 등) ①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
2.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

제7조(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)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, 프로그램,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

제8조(설치 및 기능) ①시장은 시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 범위, 비용분담,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
3.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·유지보수 등의 계획
4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
5.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협의회 구성 및 임기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

1. 사천시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
2.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,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3.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- ④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 및 의사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)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리정보 총괄부서의 지리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14조(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제4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 및 활용

제15조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) ①시장은 수집·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유·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,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 (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) ①관리부서의 장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
2.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지리정보자료의 적극 활용
3.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,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통보
4.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시 지리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.

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.

제17조(보급 및 활용 등)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8조(목록의 작성 및 유통)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(지리정보의 유형, 내용, 품질, 보안,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 유통망(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 하는 통신망을 말한다)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지리정보 제공) ①시장은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수수료)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.

제21조(보안관리) ①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 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2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③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【 별표1 】

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(제20조제1항 관련)

종 류	금 액	비 고
수치지도	측량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금액 적용	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

【 별표2 】

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20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. 사천시의 지하시설물(전기, 통신, 가스, 난방, 송유 등)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 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. 이 경우,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. 3. 기타 재해·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자료의 가공결과를 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100%
4.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	50%

관계법령발췌

측량법

제11조 (지도등의 판매가격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
2. 축척
3. 규격
4. 단위
5. 판매가격
6. 기타 필요한 사항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

제5조 (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(이하 "기본지리정보"라 한다)의 구축 및 관리
3.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
4.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
5.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
6.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
7.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
8.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
9.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(이하 "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"라 한다) 및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화추진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.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는 이를 생략한다.

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정보와

관련된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

제6조 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 (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) ①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
2.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
3.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

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6조 (상호협력) ①정부는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·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산업계·학계 등과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 (지리정보목록의 작성)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거나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관한 목록(이하 "지리정보목록"이라 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지리정보목록의 작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목록을 수요자가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·판매 등)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③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이용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

제22조 (수수료)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,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